

대구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가단11698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은규

피고대구광역시 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곽경화, 송해익, 이춘희, 임성우, 최봉태, 양상열, 최보람, 이경우

변론 종결2021. 2. 19.

판결 선고2021.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대구광역시 남구 B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합니다)지상에 C요양병원 D동을 증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2.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자입니다(갑제1호증의 1 사업자등록증, 갑제1호증의 2 법인등기부등본).

2. 이 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및 원고의 위 부담금 납부 완료 1). 피고는 원고가 사용승인 신청한 대구광역시 남구 B 외 2필지의 지상건축물 'C요양병원'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에 근거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42,617,94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의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통보서, 갑 제2호증의 2 납부영수증)

2). 위와 같이 피고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 2. 위 부과된 242,617,940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대지위의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용도 요양병원 1개동 지하2층/지상14층 건물 증축에 대하여 2018. 1. 4.자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갑 제3호증 집합건축물대장).

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위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상 C요양병원에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 2,150인용 부패탱크식 정화조를 증설하였고, 정화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갑 제4호증 정화조 준공검사 결과통보)

3.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중복된 행정행위로 이중부과

가. 하수도법이 규정하고 있는 '오수' 처리방법의 이원화 1).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그 재원을 특정 국민에게서 마련하는 제도로써, 개별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부과되며, 하나의 목적을 위해 두 개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내지 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참조), 하수도법에서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수'의 처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규정과 더불어 법 제61조에서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규정을 두어 이원화된 '오수' 처리방법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수'를 발생시키는 자에 대해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항 2호에서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즉 분류식 또는 합류식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하수처리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때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법 제6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제1항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여 공공하수도를 통해 오수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자(건축주, 건설주체 등)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오수'를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원인자에 대해 하수도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수처리 방법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원화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원화하여 처리하는 이유는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 "하수처리구역"의 정의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없는 하수처리구역외의 지역에서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하루 2톤 이하일 경우 정화조, 2톤 이상일 경우 오수처리시설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내/외에 따라 이원화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수처리구역내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2). 그런데 원고가 사용승인 받은 이 사건의 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C요양병원' 건축물의 증축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인 2,150인용 부패탱크식 정화조를 증설하고, 원인자부담금도 납부하는 등 사용승인의 조건으로 중복된 행정행위를 강요받았으며, 이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오수'를 발생시키는 자로써 "오수"의 처리라는 하나의 목적에 대해 두 가지 중복된 행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는 부담금 관리기본법 제5조의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비추어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자, 같은 하수처리구역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정화조 설치가 면제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하는 경우와 비교해봤을 때, 이것은 불평등한 처분이기도 합니다.

3). 하수도법을 주관하는 환경부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안내를 위해 발행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Q&A(2010)'에서는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 적은 비용을 부담하므로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Q&A)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하여 1).

하수도법 제34조 제3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5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제정된 환경부고시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위 고시 제3항의 가목에 따른 <별표>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인 환경부고시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오수발생량을 산정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하수도법 제2조상 용어의 정리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합류식 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8. "분류식 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의 3호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라.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여 환경부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초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준을 정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으로 위 고시를 조례로써 명시해놓았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대지위의 건축물 "C요양병원"은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오수발생량은 187.49455톤이고 대구광역시 하수원단위 발생량인 1,294,000원으로 다음과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증축) -

	지1층	요양병원	112.135	30	m ²	0	3,364.05
	1층	74.67	m ²	0	2,240.10		
	2층	436.35	m ²	0	13,900.50		
	3층	519.42	m ²	0	15,582.60		
	4층	549.78	m ²	0	16,493.40		
	5층	549.78	m ²	0	16,493.40		
변경		6층	549.78	m ²	0	16,493.40	
	7층 (급식시설있음)	549.78	m ²	0	16,493.40		
	8층	549.78	m ²	0	16,493.40		
	9층	540.00	m ²	0	16,200.00		
	10층	540.00	m ²	0	16,200.00		
	11층	540.00	m ²	0	16,200.00		
	12층	540.00	m ²	0	16,200.00		
	13층	510.50	m ²	0	15,315.00		
	14층	521.30	m ²	0	15,639.00		
계	213,308.25						

오수발생량	213,308.25 ℓ - 25,813,70 ℓ (기존오수발생량) = 187,494,55 ℓ (187.49455톤)
하수종말처리 시설 부담금	1,294,000원/톤 × 187.49455톤 = 242,617,947원
하수관거	0원/톤 × 187.49455톤 = 0원
부담금	

오수발생량	213,308.25 ℓ - 25,813,70 ℓ (기존오수발생량) = 187,494,55 ℓ (187.49455톤)
단독정화조	0원
비용	
하수처리	242,617,947원 + 0원 = 242,617,940원
원인자부담금	

피고는 원고가 하루 187.49455톤의 오수를 새로이 발생시킨다는 전제로 위와 같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 대지에 설치된 부패탱크식 정화조는 2,150인용 정화조로 환경부고시에 따라 오수발생량으로 환산을 하게되면 하루 430톤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1인당 하루 오수발생량은 200L × 2,150 = 430톤)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한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위법성 1). 첫째, 위와 같은 용어의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오수"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물에서 발생한 오수가 그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를 거쳐 배수설비를 통해 합류식 하수관로에 유입이 된다면 이는 오수를 정화시켜 배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공공하수관로에 "오수"를 유입시키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오수'를 처리하는 경우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2천이용 이상의 정화조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원고로서는 비용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또한 이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를 설치한 자가 건축한 건축물이 위 조항 단서 제3호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면제되는 합류식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위 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부담하였다면, 피고의 행정관할 구역인 남구 전체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류식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구역의 건축주는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고 원인자부담금만 납부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건축주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하수처리구역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합류식하수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 면제규정과 모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류식 하수관로지역에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분뇨 및 오수만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환경부 고시상 공중화장실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제곱미터당 170L로 원고의 "C요양병원"의 전체 화장실 면적을 다 합쳐도 피고가 부과한 오수발생량에는 턱없이 적은 양의 오수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마. 구법과의 관계 및 법의 취지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야기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으며, 법률 제8014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이하 '오폐수법')" [2006. 9. 27.]에 따라 오폐수법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편입 전구 하수도법(시행 2006. 8. 5.) 제32조(원인자부담금 등) 제4항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대상임을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이 통합되어도 오수발생량은 환경부고시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는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2). 하지만 법이 통합된 후 구법의 내용에 대해 하수도법 제32조(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제2항"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직접 개인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음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원인자 부담금을 중복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특정 국민에게만 적용하는 부담금의 특성상 국민적 저항이 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재원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어 행정편의적인 관행대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인접한 경산시의 하수도 사용조례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정화조 공사비용을 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해봤을때, 이는 피고의 재량일탈 및 남용 행위이자 행정편의적 처분으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정화조는 매년 청소와 관리에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며, 게다가 원고는 하수도 사용요금까지 부담하고 있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건축물 전체의 오수처리가 가능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인 2,15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고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5조 "이중부과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바.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원고의 입장에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원인자부담금 납부 등 두 번에 걸쳐 처분 받은 부당함이 있어, 아래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 합계 253,607,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 원고는 우선 그 중 일부청구로 피고에 대하여 3천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합니다.

* 오수발생량 환급분의 계산(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의 3의 비율)

원리금의 합계 : 금 253,607,530원

(원금 : 금 242,617,940원, 이자계 : 금 10,989,593원)

※ 원단위 절사

원리금의 계산내역

원금 : 금242,607,530원

이자: 금10,989,593원

원금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8. 3. 18.까지(75일) 연1.6%(금797,648원)의,

2018. 3. 19.부터 2019. 3. 18.까지(365일) 연1.8%(금4,367,122원)의,

2019. 3. 19.부터 2020. 3. 12.까지(359일) 연2.1%(금5,011,223원)의,
2020. 3. 13.부터 2020. 5. 21.까지(70일) 연1.8%(금813,600원)의,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야기한 원인자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 이중의 행정행위로 인한 이중부과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 합계 금 253,607,5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우선 그 중 일부청구로 피고에 대하여 3천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합니다

2. 판단

원고는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인 2,150인용 부패탱크식 정화조를 증설하고도, 피고가 사용승인의 조건으로 다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담금관리법 제5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구체적으로 하수처리구역 안의 경우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하수도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원고는 위 법령 등에 따라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 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5와 같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절차 등) ① 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2.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한편, 원고는 '하수처리구역내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하수처리구역1)'과 '하수관로정비구역2)'은 엄연히 다르고, 이 사건 대지는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3) 된 지역이 아니므로(즉 원고의 주장처럼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의 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정화조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오수"가 증가되는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하고(하수도법 제2조 제1호),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오염된 물에는 변기에 연결된 배관을 타고 정화조를 거친 오염된 물 이외에도 정화조를 통하지 않은 대다수의 많은 오염된 물(주방에서 사용하는 물, 샤워장에서 사용하는 물, 화장실 세면대에서 사용하는 물, 세탁실에서 사용하는 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정화조를 거친 오염된 물 이외에도 많은 생활 오수가 하수처리구역 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므로 피고가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대구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수도법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구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에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5.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7.10.>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 준공예정일(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포함) 시점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5.9.30.>

② 원인자부담금은 건축 인·허가시 부담금의 개산액을 사전 예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1개월 전까지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며,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 등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9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이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화조 증설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중화

1)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합니다.(하수도법 제2조 제15호)

2) "하수관로정비구역"은 환경부령(하수도법시행규칙 제25조)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고한 구역을 말합니다.

3) 공공하수도관리청인 대구광역시청은 이 사건 대지가 위치한 구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적이 없고, 피고의 담당자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도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고된 곳은 없다고 합니다(을 제1호증, 질의에 대한 회신).